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8-89호
2018. 11. 23.(화)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58호)1

공 고(9)

- 불법명기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874호)2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문평1호선)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18-881호)5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읍내26호선) 공사완료 공고(공고 제2018-883호)6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886호)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891호)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892호)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8-893호)10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8-895호) ...11
- 대덕문화회관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공고 제2018-896호)12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제2018-882호)13

공									
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외동 280-1	신탄진로 317	2018 11 23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덕암동 207	덕암로153번길 44-9	2018 11 23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불법명의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소유권이전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요청서를 송달 하였으나, 장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불법명의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17.(25일간)
3. 공고대상 : 불법명의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총 25대) / “별첨”
4. 공고내용 :

가. 공고대상인 불법명의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업)소유 매매용(상품용)자동차로써 합법적인 등록(이전등록 등)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실제 점유하여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판단이 되는 바

나. 공고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신청) 규정에 의거 區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영업하였던 당시 제시된 매매용(상품용) 자동차 중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조속한 시일 내 등록관청(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불법명의 자동차(매매용(상품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하여 줄 것을 동의·요청하오니, 공고기한일 까지 운행정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 匾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표시 기간 내 운행정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匾에서 불법명의자동차(매매용(상품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합니다.

라.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 제81조(벌칙)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및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처분기관 및 연락처

가. 처분기관 : 대전광역시대덕구청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20(오정동)

다. 연 락 처 : 교통과 (담당자 : 전용구, ☎ 042-608-5275)

□ 불법명의자동차 이전등록 및 운행정지명령 대상

연번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연번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1	31러2290	랭글러짚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6	04어6188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	대전31노2609	스포티지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7	04나2632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3	대전31나8128	에스페로 1.5AT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8	04너9850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4	대전31무1900	수퍼살롱 2.0AT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9	31머2880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5	대전30가1375	르망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0	대전31나5685	그랜저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6	대전31고1805	티코(TICO) 오토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1	대전1소9413	아벨라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7	대전80가8365	포터초장축 더블캡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2	03가5947	세피아오토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8	대전1구7945	쏘나타오토 매틱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3	대전70너9117	카렌스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9	31거3025	쏘나타투1.8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4	대전31머5255	무쏘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0	대전32노5183	쏘나타투1.8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25	31러7663	푸조405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1	31라1214	쏘나타 1112.0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 이 하	여 백 -	
12	31러8218	쏘나타 1112.0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3	04너9376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4	04너9396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15	04너9333	EF쏘나타LPG	달○지카모터스 (황○경)*상품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건물위생관리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8. 12. 10.
3. 처분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3항
4. 직권말소처분 사항 공시송달 내역
- 대상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건물위생관리업	에코시스	한남로67번길 9, 4층(오정동)	유민근	2016.10.10.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5.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07.(14일간)
 6.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0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6902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문평1호선) 공사완료 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04-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문평1호선)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문평1호선)
- 사업의 명칭 : 산업단지 내(소로3-문평1호선)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덕구 문평동 104-2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81.6m, B=6.0m(7필지 편입면적 501.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17. 09. 29 ~ 2018. 09. 10.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읍내26호선) 공사완료 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3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읍내26호선 일부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2-읍내26호선 일부개설)
- 사업의 명칭 : 법동 43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덕구 법동 433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108.3m, B=8.0m(9필지 편입면적 88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시행기간 : 2017. 10. 27 ~ 2018. 10. 24.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와동	도시가스관 매설	와동 346-35 앞	90	아스팔트	2.0	2018. 11~ 12. (착공일로 부터 20일간)	9.6 (착공일로 부터 20일)	0.72 (허가일로 부터 10년)
				90	콘크리트	6.0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덕암로	도시가스관 매설	덕암동 52-10 앞	63	아스팔트	1.0	'18.11 ~ 12. (착공일 로부터 20 일간)	56.4 (착공일 로부터 20 일)	5.1 (허가일 로부터 10년)
2	계족로	도시가스관 매설	법동 208-6 앞	63	아스팔트	1.0			
				63	소형고압블럭	1.0			
3	석봉동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180-19 앞	63	아스팔트	5.0			
4	석봉로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307-28 앞	63	아스팔트	3.0			
5	회덕로	도시가스관 매설	신대동 226-1 앞	160	아스팔트	7.0			
6	회덕로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159-8 앞	63	투수콘	1.0			
7	신탄진로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295-197 앞	63	투수콘	1.0			
8	한남로	도시가스관 매설	오정동 175-11 앞	63	아스팔트	4.0			
				63	투수콘	2.0			
9	흥도로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237-5 앞	63	아스팔트	2.0			
10	석봉로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308-12 앞	160	아스팔트	15.0			
				63	아스팔트	4.0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덕암동	도시가스관 철거	덕암동 17-29 앞	63	아스팔트	3.0	'18.11 ~ 12. (착공일 로부터 20 일간)	10.0 (착공일 로부터 20 일)	-
2	대전로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98-5 앞	63	아스팔트	2.0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07(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 대상업소 :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74(옥스포드피시방스넥송촌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07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위생과 위생안전담당 ☎(042)608 - 6903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 협약체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덕문예회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위탁시설 : 대덕문예회관 /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2. 협 약 일 : 2018. 11. 22.(목)
3.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3년
4. 수탁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대덕문화원	이종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5. 위탁범위 : 대덕문예회관 제반시설 관리·운영.
6. 협약사항 : 위탁업무 범위, 위탁기간,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 끝.

10. 합격자 발표

-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1. 27.(화) / 개별 유선통보
- 나. 2차 시험(면접) : 2018. 11. 28.(수) / 1차 합격자에 한해 장소·시간 연락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29.(목) / 개별 유선통보

11. 기타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 결정 후에라도 부적합한 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 근로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1일전에 개별통지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042-608-5214)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정기포상의 인원 및 시기를 적절하게 정비하여 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포상의 인원 및 시기를 적절하게 정비함(안 제3조 및 안 별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포상에 관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지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12.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총무과(전화 : 042-608-6524, FAX : 042-608-3821, E-mail : kimyu8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과 담당자 김유경(전화 : 042-608-6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 포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랑스러운 공무원: 연 1회(12월)
2. 모범공무원: 연 2회(7월, 12월)
3. 으뜸공무원: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4. 효행공무원: 연 1회(5월)
5.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퇴직 당일

제3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5호 중 “각종평가”를 “각종 평가”로 하고, “선정되는데”를 “선정되는 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을 “별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심사 선발”을 “심사·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처분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사실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제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준용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안건 상정시”를 “안건 상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으로”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적심사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비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제9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추천권 자”를 “추천권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1. 상급기관 국·시비 확보 및 행정역량평가 결과 우수 부서 표창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공모사업 등 국·시비 확보	10억원 이상	5,000천원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000천원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3,00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00천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5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천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4,000천원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3,0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0천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500천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00천원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0천원
기관표창	대통령 표창	700천원
	국무총리 표창	500천원
	장관 표창	300천원

※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

2. 그 밖의 포상

표 창 명	인 원	표창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모 범 공 무 원	2명	7월, 12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으 뜸 공 무 원	4명	4월, 7월, 10월, 12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효 행 공 무 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 직 하 는 공 무 원	미정	퇴 직 당 일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
공 무 원 배 우 자	미정	수 시	공무원 배우자		공로패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표창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 시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 적 심 사 의 결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유공 표창 대상자로 심의 의결함.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연수	추천훈격	수공분야	비 고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

위원별 의견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적격여부		부적격 사유
		적 격	부 적 격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심 사 조 서

표 창 명

목 적

주요 심사내용

기타 참고사항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기서훈	공적내용	추천순위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개 요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근무연수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속(민간인은 주소)			
직위(급)		생년월일	
성 명	(한 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20 년 월 일

<현지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비위사실 유·무 확인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포상·표창 훈 격 명	징계유무 사실확인

20 년 월 일

작성자 감사업무담당 (인)
확인자 감사업무부서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위원(명)

심사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안건별 심사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간 사

서명

위원장

서명

공 적 심 사 대 장

연 번	년월일	안 건	심사내용	심사결과	소관부서	결 재	
						서기	간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구정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 포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시행에 ----- ----- -----.</p>
<p>제2조(적용 범위) (생략)</p>	<p>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p>
<p>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① (생략)</p> <p>② 정기포상은 다음 <u>각호</u>에 따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u> : 연 1회(12월) 2. <u>이달의 으뜸공무원</u> : 매월 3. <u>모범공무원표창</u> : 연 2회(7월, 12월) 4. <u>효행공무원표창</u> : 5월 5. <u>20년 이상 재직공무원 중 퇴직 예정 공무원 표창</u> : 퇴직당일 <p>③ 수시포상은 다음 <u>각호</u>에 따라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p>제3조(포상종류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랑스러운 공무원</u>: 연 1회(12월) 2. <u>모범공무원</u>: 연 2회(7월, 12월) 3. <u>으뜸공무원</u>: 연 4회(4월, 7월, 10월, 12월) 4. <u>효행공무원</u>: 연 1회(5월) 5. <u>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u>: 퇴직 당일 <p>③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5.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의 <u>각종평가</u>에서 우수기관으로 <u>선정되는데</u> 크게 기여한 경우</p> <p>6. (생략)</p> <p>④ <u>제3항의 규정</u>에 따른 포상의 경우는 별도 시행계획을 <u>수립</u> <u>시행하여야</u> 한다.</p> <p>제4조(포상에 따른 부상)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u>[별표]의 기준</u>에 따른다.</p> <p>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p> <p>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u>심사</u> <u>선발</u>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u>다음에 의하여</u> 우선순위를 결정한다.</p> <p>1.·2. (생략)</p> <p>③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표창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 ----- <u>각종 평가</u>----- <u>선정되는 데</u> -----</p> <p>6.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u>----- -----<u>수립.</u> <u>시행하여야</u>-----.</p> <p>제4조(포상에 따른 부상)----- ----- <u>별표</u>-----.</p> <p>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p> <p>① ----- ----- <u>심사·</u> <u>선발</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 각 호에 따라</u>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1. <u>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u></p>	<p>1. <u>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u></p>
<p>2. <u>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조사 중에 있는 자</u></p>	<p>2. <u>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이 비위사실조사 중에 있는 사람</u></p>
<p>3. <u>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u></p>	<p>3. <u>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u></p>
<p>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u>표창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로 구성·운영한다.</p>	<p>제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제10조제2항에----- -----공적심사위원회로-----.</p>
<p>② <u>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사위원회를 준용 한다.</u></p>	<p>② <u>위에 운영에 관한 사항-----준용한다.</u></p>
<p>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u>안전상정시</u>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p>	<p>제7조(회의) ① -----<u>안전상정시</u>-----.</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u>출석위원 2/3 이상 찬성</u>으로 의결한다.</p> <p>③ (생략)</p>	<p>② ----- -----<u>출석위원 2/3 이상 찬성</u>으로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안전의 제출)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적심사의결서 1부(별지 제1호 서식)</u> 2. <u>공적심사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u> 3. <u>공적조서 1부</u> 4. <u>공적개요서 1부(별지 제3호 서식)</u> 5. <u>현지조사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u> 6. <u>비위사실 유·무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u> <p>② (생략)</p>	<p>제8조(안전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적심사의결서(별지 제1호서식)</u> 2. <u>공적심사조서(별지 제2호서식)</u> 3. <u>공적개요서(별지 제3호서식)</u> 4. <u>현지조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u> 5. <u>비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u> 6.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u>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결)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u> 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9조(의결) -----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u> -----.</p>

현행	개정안
<p>제10조(회의록 및 심사대장) ① <u>제7조제3항의 규정</u>에 따른 회의록은 <u>별지 제6호 서식</u>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전별 심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전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u>」 제10조제3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u>별지 제1호 서식</u>에 의한 심사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u>별지 제7호 서식</u>에 따른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p>	<p>제10조(회의록 및 심사대장) ① <u>제7조제3항</u>----- -- <u>별지 제6호서식</u>에 따라----- ----- ----- ----- ----- -----.</p> <p>② 「<u>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u>」 제10조제3항에 따라 --- ----- ----- ----- ----- -----<u>별지 제1호서식</u>에 따른----- -----.</p> <p>③ ----- ----- ----- -----<u>별지 제7호서식</u>----- -----.</p>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u>추천권자</u>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 ----- ----- -----<u>추천권자</u>----- ----- -----.</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